

## 대학원 스포츠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02. 22.  
1차 개정 2014. 05. 14.  
2차 개정 2015. 02. 03.  
3차 개정 2016. 03. 0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스포츠과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위원회)**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02.03)

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을 별지 제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 추천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5.02.03)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5.02.03)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개정 2015.02.03)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 발표 후 별지 제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를 학과에 제출한다.(개정 2015.02.03)

⑤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02.03)

**제4조(논문제출자격기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1. 3학기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2. 제5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3. 제8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

1. 3학기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2. 제5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3. 제8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제10조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제출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③시험결과는 5년간 학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박사학위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50점 이상(개정 2014.05.14.)
2. TOEIC 550점 이상(개정 2014.05.14.)
3. TOEFL(CBT) 160점 이상(개정 2014.05.14.)
4. TOEFL(IBT) 52점 이상(개정 2014.05.14.)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교 스포츠과학과 석사과정(스포츠과학전공)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스포츠 문화·산업 전공, 스포츠건강 전공)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03.02.)

**제9조**(논문 계획 및 공개 발표) ①계획발표 1주일 전까지 제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5.14.)

②논문제출자는 학과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계획발표와 결과발표를 한다. 단, 박사학위 과정의 결과발표 공개여부는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05.14.)

**제10조**(학술지 논문게재 의무) ①박사학위과정은 KCI(한국학술재단)급 이상의 등재(후보)지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1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제11조**(예외) ①(삭제 2014.05.14.)

②(삭제 2014.05.14.)

**제12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4학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4.05.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하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02.0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3.0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

학 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원 (위원장)

위와 같이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서명)

지도교수 \_\_\_\_\_ (인,서명)

### 스포츠과학전공 주임교수 귀하

※ 작성요령

- 대상 :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 과정 학생
-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함
-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함

## 논문 계획 승인서

소 속 대 학 :

전 공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  
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 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과주임 : (인)

스포츠과학전공 주임교수 귀하